【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2004. 1. 31(토) 제97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1. 20.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2004.1.26.

다. 상 정 일 자 : 2004. 1. 28.(제97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가. 제안이유

○ 표준정원제 시행과 조직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 해결을 위하여 공무워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13명에서 946명으로 3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899명을 930명으로 31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을 16명으로 2명 증원 어어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가. 법적검토

○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적용이 정지된 표준정원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정원의 산식을 적용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2003. 5. 9)개정에 따라 우리시는 현정원 913명에서 표준정원을 948명으로 35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을 제외하고(5급이상은 승인사항)6급이하의 정원에 대하여 35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저 함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법규적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6급 포함)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 하도록 하였으므로 6급담당 신설은 직무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 증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중기기본인력계획과 연계하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행정적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의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정원 책정기준운영기본방향으로
 -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합리적 준수와
 - 정원조정시 실무인력인 하위직급의 우선책정
 - 기준이내라도 단순한 승인목적의 인위적 대략적 정원조정을 억제 토록 하고 있으므로
-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33명의 인력을 증원 할 시는
 - 정원과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의 부합여부
 - 신규인력증원 분야와 인력감축분야의 검토
 -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관련 비용의 비율
 - 일용직, 비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
 - 민간위탁 계획
 - 공무원배치를 수반하는 신규 시설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을 검토한 토대로 인력을 배분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인력의 수급에 대비하여 일시에 33명을 증원하는 안과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연차별, 단계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제9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부록】

○ 표준정원제 시행을 앞두고 제천시 기구정원승인 요구안에 의하면 4급1명, 5급4명으로 5급이상 5명을 승인요청 한바 있음.

표준정원증가인원 35명중 33명을 조정하면 잔여인원 2명으로 5급이상 5명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인 요청한 5급 이상 승인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상급 부서와 계속협의 추진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2003. 8. 11 도에 표준정원제에 준해서 정원요청을 했을 때 4급, 5급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를 신청했는지(김기상 위원)
- 당초에 기구설치 할 때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4급 1명, 5급 3명 그리고 6급 담당, 직원 몇 분을 신청했는지(김기상 위원)
- 별정직 증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별정직은 보건소에 관련된 것인지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증원을 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김진학 위원)
- 별정직이 표준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없는지(유영화 위원)
- 지금 표준정원제로 했을 때 책정 받을 수 있는게 현재 4급이상이 2명, 5급 상당이 6명 증원 가능한 것이 아닌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준 것도 행자부이고, 그 지침에 의거 요구하면 해 줘어야 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유영화 위원)
- 15만 미만의 시는 본 청에 두는 과를 17개과 만 둘 수 있는데 직속기관(농업추산과 ⇒ 농업기술센터로)에 두는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유영화 위원)
- 도농 복합시는 표준정원을 현정원 대비해서 3%정도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몇% 증원하는 건지 33명을 증원 안 했을 때에도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받는지, 아니면 현정원 기준에서 교부세를 받는지(유영화 위원)

-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 4급은 수도사업소를 통합해서 물관리사업소로 4급을 요청하고, 5급은 청풍관광시설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기업유치단, 수도사업소의 1개과 증설을 5명을 요청
 - 정원승인 신청은 중앙에는 5급이상만 신청하기 때문에 전체 34명을 증원 신청했음.
 - 별정직은 전체 2명을 증원할 수 있음. 일부 사회복지업무 별정직과 수도사업소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음.
 - 일반직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음.
 - 인구 15만이하의 기준에 17개실과이상 편재를 제한해 놓고 있으며, 행자부 승인사항임. 기준 때문에 증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직속기관에 두는 과와는 관계없음.
 - 우리시의 증원은 3%조금 넘고, 표준정원 기준으로 교부세를 받음
- 5. 소수의견"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